

##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도 개편

(규칙§32, 별지 제32호, 제32호의2, 제33호, 제33호의2)

### 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수입 담배 통관시 세관장에게 납세담보확인서 등 제출(규칙§3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·군수에게 납세담보 제공 후 납세담보확인 발급신청서(별지 제32호)를 신청 → 납세담보확인서(별지 제33호)를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</li> <li>○ <u>(신 설)</u></li> </ul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세관장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담보면제확인서 등 서식 신설(규칙§3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현행과 동일)</li> <li>○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경우도 세관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식 신설*</li> </ul> <p>* (별지 제33호)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(별지 제33호의2) 납세담보면제확인서</p>

### □ 개정 내용

-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면제받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및 발급받는 서류\* 서식 정비
  - \* **납세담보 제공시** : 납세담보제공확인 발급신청서 제출 → 납세담보제공확인서 발급
  - 납세담보 면제시** :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제출 → 납세담보면제확인서 발급

### 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

#### |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